

교육 훈련 위탁계약서(기업직업훈련카드)

본 훈련 계약은 "기관명 " (이하 "갑")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러닝" (이하"을")는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범위 및 내용)

가. "갑" 과 "을"의 계약범위 및 내용은 아래 "나" 항으로 한다.

나. 계약내용

계약기간	세부 훈련기간	훈련대상	사업예산(훈련비)
계약일로부터 1년 (자동갱신)	계약기간 중 "갑"의 지정일	임직원 및 근로자	차시별 수강인원 X 각 과정별 수강료

제2조 (계약기간 및 갱신인원)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나. 위탁 계약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본다.

다. 계약갱신은 상호 간의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지 않을 시 자동계약 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 (훈련 방법)

가. "갑"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나. "갑"은 훈련을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 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 및 수료증을 발급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 (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진다.

제7조 (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 관련은 정보의 교육 실시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됨을 동의한다.

제8조 (통보의무)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퇴직, 전보 등)발생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훈련기관명

에스에이치이러닝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04-86-60018

대 표

인

대 표

오 상 현

